

의안번호	2200399
의 퇴 인	김성원의원
회 답 일	2024. 7. 9.
추계번호	24D0415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6년 8억 5,9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40억 2,400만원(연평균 8억 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평균
위원회, 실무위원회, 실무지원단의 설치·운영, 감사위원회·감사기구의 설치·운영 및 감사위원장 임명, 설치·운영,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12조, 제21조~제23조, 제28조 및 제29조)	859	769	783	799	814	4,024	805

주: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경기북부자치도의설치)	-정부의 직할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경기북부자치도”라 함)를 설치함 -경기북부자치도의 관할구역은 고양시·남양주시·파주시·의정부시·양주시·구리시·포천시·동두천시·가평군·연천군으로 함¹⁾	의무규정
2	안 제8조(경기북부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국가는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및 이와 연계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상·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기북부자치도에 대하여 그 관할 구역안의 도시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과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 [참고 1] 제정안에 따른 관할구역 및 인구 수의 변화

3	안 제9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는 경기북부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 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4	안 제12조(경기북부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경기북부자치도의 원활한 출범 지원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기북부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둔 -경기북부자치도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함 -경기북부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하고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함	의무규정
5	안 제15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3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음	재량규정
6	안 제16조(조직 특례) 및 제20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경기북부자치도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구규모·면적·도시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자치도조례로 정할 수 있음 -경기북부자치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과와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도인사위원회 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	재량규정
7	안 제2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제23조(감사위원회 사무기구)	-경기북부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등 자치도조례로 정하는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북부자치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둔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감사위원장은 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자치도지사가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함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고, 사무기구의 직원은 일반직·특정직 국가·지방공무원으로 함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기구의 조직·직무·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함	의무규정

8	안 제28조(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29조(기본계획의 내용)	-경기북부자치도지사는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개발, 내·외국인 투자유치 등에 관한 내용의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의무규정
9	안 제30조(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제37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제45조(토지수용 등) 및 제47조(비용의 부담)	-경기북부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할 수 있음	재량규정
		-경기북부자치도지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함	의무규정
		-개발사업시행자는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에 대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내에 있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재량규정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함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안의 도로, 상·하수도는 경기북부자치도, 전기·가스공급시설·지역난방시설은 전기·가스·지역난방 공급자, 통신시설은 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부담으로 설치함	의무규정
10	안 제49조(세제 및 자금 지원) 및 제50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 및 경기북부자치도는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임대하는 부지 조성, 토지 등 임대료의 감면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국가 및 경기북부자치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용수·철도·통신·전기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1	안 제51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지원)~제55조(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입주기업의 대체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자금 지원)	-국가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의 사업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고, 기금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국가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6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는 입주기업이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 사항에 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2	안 제56조(입주의 실태조사 등)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재량규정

13	안 제58조(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시행자나 입주기업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고, 임대료는 국유재산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음	재량규정
14	안 제65조(특례 부여 및 지원)	-경기북부자치도의 시장·군수는 경기북부자치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시·군에 대한 특례 부여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 -시장·군수의 특례 부여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경기북부자치도는 특례를 부여받은 시·군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7조(경기북부자치도의설치)	×	-경기북부자치도 신설에 따라 새롭게 선출되는 경기북부자치도지사·도교육감 및 추가 채용되는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경기북부자치도청 청사 신축 경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등의 재정소요가 발생 -다만,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에서 이관될 공무원의 수 및 신규채용 직원의 수, 신축 청사의 규모 및 위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추가 설치 ²⁾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2	안 제8조(경기북부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	-국가의 점경지역경제자유특구 및 경기북부자치도에 대한 행정상·재정상의 지원 규모를 추정 곤란
3	안 제9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별도 계정으로 지원할 각종 국가 보조사업 수행비용 등의 규모, 지원비율 등을 추정 곤란
4	안 제12조(경기북부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	-
5	안 제15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	-구체적인 주민투표 요건을 도조례로 위임하고 있고, 주민투표 실시 청구요건 완화에 따른 주민투표 증가 건수 등을 추정 곤란

6	안 제16조(조직 특례) 및 제20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 지역인재 선발채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도조례로 위임하고 있고, 수습과정을 거쳐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될 지역인재의 수 등을 추정 곤란
7	안 제2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제23조(감사위원회 사무기구)	○	-
8	안 제28조(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29조(기본계획의 내용)	○	-
9	안 제30조(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제37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제45조(토지수용 등) 및 제47조(비용의 부담)	×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지역의 위치·규모, 경기북부자치도지사가 지정할 개발사업시행자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개발사업의 규모,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규모, 비용 부담 규모 등을 추정 곤란
10	안 제49조(세제 및 자금 지원) 및 제50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	-자금지원 및 기반시설 우선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자금지원 및 기반시설 우선 지원 규모 등을 추정 곤란
11	안 제51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지원)~제55조(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입주기업의 대체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자금 지원)	×	-기금의 사용 등 각종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사용 규모, 국가의 입주기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예방 지원 등 각종 지원 규모를 추정 곤란
12	안 제56조(입주기업의 실태조사 등)	×	-입주기업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실태조사의 횟수, 실태조사 규모 등을 추정 곤란
13	안 제58조(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	-사용·수익·대부·매각 대상이 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공유재산을 예측하기 어렵고, 임대료 감면 규모 등을 추정 곤란
14	안 제65조(특례부여 및 지원)	×	-시장·군수의 요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여할 특례의 내용, 경기북부자치도의 시·군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 등을 추정 곤란

2) 특별행정기관은 행정수요와 지역적 특성 등에 따라 관할구역을 정하기 때문에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설치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구역이 반드시 동일하지 않으므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추가 설치 등을 예측하기 어려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12조에 따라 경기북부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고,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고 가정
 - 위원회의 위원은 총 30명이며, 이 중 20명이 위촉위원이라고 가정
 -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20명이며, 이 중 12명이 위촉위원이라고 가정
 -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에게 회의당 25만원의 회의참석 및 안전검토 수당을 지급하며, 각각 연 4회 회의를 실시한다고 가정
 - 회의참석 및 안전검토수당은 추계기간 동안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
- 안 제12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실무지원단을 설치한다고 가정하며, 실무지원단의 운영비용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특별자치시·도 지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국무조정실의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의 평균 운영예산을 준용함
 -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의 특별자치시·도지원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의 2024년 운영예산은 2억 2,600만원³⁾이고, 평균 운영예산은 5,650만원임
- 안 제21조~제23조에 따라 감사위원회 및 사무기구 설치·운영, 감사위원장의 임명에 필요한 비용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감사위원회의 사례를 준용함
 - 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회 및 감사기구의 예산은 유사사례인 강원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회 및 감사기구의 예산을 준용
 - 감사기구의 경우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감사국⁴⁾의 인력 및 예산이 일부 이

< (참고) 경기북부지역 특별행정기관 설치·운영 현황 예시 >

- (병무청) 경인지방병무청(인천·경기)
- (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경기도 고양·의정부·남양주·파주·구리·포천·양주·동두천·연천·가평, 강원도 철원)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부천·김포)
- (고용부) 의정부지청(경기도 의정부·남양주·구리·포천·양주·동두천·연천, 강원도 철원) / 고양지청(고양·파주) / 부천지청(부천·김포) / 강원지청(강원도 춘천·홍천·인제·화천·양구, 경기도 가평)

자료: 행정안전부

3) 행정실무원 임금, 직책수행경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자료: 국무조정실 2024년 예산안 설명자료)

4) 경기도의 경우 감사국을 운영 중이며 조례 개정으로 2024년 9월부터 감사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임

관될 수 있으나, 그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감사국의 인력·예산이 이관되지 않는다고 가정

- 안 제22조에 따른 감사위원장의 연봉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장의 연봉을 준용
- 안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경기도의 유사 계획 수립 예산을 준용
 - 2024년 경기도는 환경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1억원을 편성⁵⁾
 - 제정안에서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 중 첫 해인 2026년에만 발생한다고 가정
- 소비자물가상승률⁶⁾과 공무원임금평균상승률⁷⁾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함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부칙과 법안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위원회·실무위원회·실무지원단의 설치·운영(안 제12조)

- (위원회·실무위원회) 추계의 전제에 따라 위원회의 경우 위촉위원 20명, 실무위원회의 경우 위촉위원 12명에 대하여 연 4회 회의를 하고 회당 25만원의 수당을 지급
- (실무지원단) 추계의 전제에 따라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의 특별자치시·도지원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의 2024년 평균

5) 자료: 경기도 2024년 예산서

6)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2024년 4월 기준, 단위: %)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CPI)	2.6	2.2	2.2	2.1	2.1	2.1	2.0

7)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평균상승률

(2024년 4월 기준, 단위: %)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공무원임금평균상승률	2.5	1.9	1.9	1.9	1.9	1.9	1.9

운영예산(5,650만원)을 준용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

- 따라서, 안 제12조에 따라 위원회, 실무위원회, 실무지원단을 설치·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9,1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4억 6,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2] 위원회·실무위원회·실무지원단의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위원회의 위촉위원 수당	20	20	20	20	20	100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 수당	12	12	12	12	12	60
실무지원단 운영비	59	60	61	62	63	305
합 계	91	92	93	94	95	465

주: 단수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감사위원회·사무기구의 설치·운영 및 감사위원장 임명(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 (감사위원회·사무기구) 안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 및 사무기구를 설치·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5억 3,6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27억 9,200만원으로 추계됨
 - 2024년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및 사무기구의 운영 예산(5억 1,265만원⁸⁾)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
- (감사위원장) 안 제22조에 따라 감사위원장을 임명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억 2,8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6억 6,300만원으로 추계됨
 - 추계의 전제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의 연봉을 준용하고 공무원 임금평균상승률을 적용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강원

8) 감사사업비 4억 1,109만원, 기본경비 9,017만원 등

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정무직 지방공무원)의 2024년도 연봉은 1억 1,382만원, 직급보조비는 월 65만원, 정액급식비는 월 14만원으로, 인건비가 연간 1억 2,330만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안 제21조~제23조에 따라 감사위원회·사무기구를 설치·운영하고, 감사위원장을 임명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6억 6,4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34억 5,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감사위원회·사무기구의 설치·운영 및 감사위원장 임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감사위원회·사무기구의 설치·운영	536	547	558	570	581	2,792
감사위원장의 임명	128	130	132	135	138	663
합 계	664	677	690	705	719	3,45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28조 및 제29조)

- 추계의 전제에 따라 경기도의 유사 계획 사례 예산(1억원)을 준용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억 4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기본계획의 수립	104	0	0	0	0	104

라. 추계결과

- 제정안에 따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8억 5,9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40

억 2,4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위원회, 실무위원회, 실무지원단의 설치·운영 (안 제12조)	91	92	93	94	95	465
감사위원회·감사기구의 설치·운영 및 감사위원장 임명 (안 제21조~제23조)	664	677	690	705	719	3,455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기본 계획의 수립(안 제28조 및 제29조)	104	0	0	0	0	104
합 계	859	769	783	799	814	4,02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한예슬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한예슬	02-6788-4831	yeseulhan@nabo.go.kr

[참고 1] 제정안에 따른 관할구역 및 인구 수 변화

□ 제정안에 따른 관할구역 변화

현 관할구역과 제정안에 따른 관할구역의 비교

구 분	현 관할구역	제정안에 따른 관할구역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양평군,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안성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양평군, 과천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 제정안에 따른 인구 수 변화

현 경기도 인구 수와 제정안에 따른 예상 인구 수

(단위: 명)

구 분	현 인구 수	제정안에 따른 예상 인구 수
경기도	13,661,438	9,866,867
경기북부특별자치도	—	3,572,682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2024.6.)